

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
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



구 미 시

『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』 규약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

2. 제안이유

- 유엔아동권리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의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도모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(안 제1조)

- 1)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기능(안 제2조)

- 1)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
- 2)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, 연구, 교육

3)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

4)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

다. 구성(안 제3조)

1)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,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.

라. 임원(안 제4조)

1) 회장 1인, 부회장 5인(권역별 1인) 이내, 사무국장 1인, 감사1인

마. 임원의 임기(안 제5조)

1) 임원의 임기는 1년,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

바. 회의 및 의결(안 제6조)

1)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,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
2)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사. 실무협의회(안 제11조)

1)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

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둠.

- 2) 실무협의회 운영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구성은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함.

아. 경비부담(안 제12조)

- 1)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,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연회비 부담함.

4. 규약 : 붙임

5. 관계법령 : 붙임

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

제1조[목적]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[기능]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.

1.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
2.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, 연구, 교육에 관한 사항
3.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
4.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

제3조[구성] 협의회는 “별표”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,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.

제4조[임원 및 조직]

- ① 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1인, 부회장 5인 이내, 감사2인,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.
- ②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,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 부회장은 1권역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
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협의회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.

제5조[임원의 임기]

-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,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.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[회의 및 의결]

-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, 협의회 의장이 된다.
-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-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.

제7조[의안의 제출]

-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.

제8조[안건의 배부]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.

제9조[의견의 청취]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[회의결과에 대한 조치]

-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[실무협의회 등]

- ① 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.
-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.

제12조[경비부담]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,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며,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자체 별 연회비를 책정할 수 있다.

제13조[회계보고 및 결산]

-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② 협의회회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,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[규약개정]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5조[운영세칙]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제16조[가입 및 탈퇴]

-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.
-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,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.
-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, 협의회회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.

[별표]

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현황 (36개)

구 분	성 명	소속 / 직위	주소
회 장	김영배	서울특별시 성북구 / 구청장	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(삼선동5가)
부 회 장	박춘희	서울특별시 송파구 / 구청장	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(신천동)
부 회 장	원정희	부산광역시 금정구 / 구청장	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(부곡동)
부 회 장	곽상욱	경기도 오산시 / 시장	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)
부 회 장	복기왕	충청남도 아산시 / 시장	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(온천동)
부 회 장	김승수	전라북도 전주시 / 시장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10(서노송동)
고 문	박원순	서울특별시 / 시장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
고 문	서병수	부산광역시 / 시장	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
고 문	윤장현	광주광역시 / 시장	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(치평동)
고 문	이춘희	세종특별자치시 / 시장	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(보람동)
고 문	문동신	전라북도 군산시 / 시장	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(조촌동)
감 사	조길형	충청북도 충주시 / 시장	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(금릉동)
감 사	장옥현	경상북도 영주시 / 시장	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(휴천2동)
회 원	김영종	서울특별시 종로구 / 구청장	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(수송동)
회 원	정원오	서울특별시 성동구 / 구청장	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(행당동)
회 원	김기동	서울특별시 광진구 / 구청장	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(자양동)
회 원	이동진	서울특별시 도봉구 / 구청장	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(방학동)
회 원	김성환	서울특별시 노원구 / 구청장	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(상계동)
회 원	문석진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/ 구청장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(연희동)
회 원	노현송	서울특별시 강서구 / 구청장	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(화곡동)
회 원	차성수	서울특별시 금천구 / 구청장	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63길91(시흥동)
회 원	이해식	서울특별시 강동구 / 구청장	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(성내동)
회 원	윤순영	대구광역시 중구 / 구청장	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139길 1(동인동2가)
회 원	강범석	인천광역시 서구 / 구청장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

구 분	성 명	소속 / 직위	주 소
회 원	송광운	광주광역시 북구 / 구청장	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(용봉동)
회 원	임우진	광주광역시 서구 / 구청장	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(농성동)
회 원	허태정	대전광역시 유성구 / 구청장	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(어은동)
회 원	이병선	강원도 속초시 / 시장	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)
회 원	염태영	경기도 수원시 / 시장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(인계동)
회 원	양기대	경기도 광명시 / 시장	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(철산동)
회 원	이필용	충청북도 음성군 / 군수	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
회 원	김홍장	충청남도 당진시 / 시장	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(수청동)
회 원	박성일	전라북도 완주군 / 군수	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지암로 61
회 원	조충훈	전라남도 순천시 / 시장	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(장천동)
회 원	정현복	전라남도 광양시 / 시장	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(중동)
회 원	남유진	경상북도 구미시 / 시장	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(송정동)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회의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
제153조(협의회의 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의회 명칭
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4.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5. 협의회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6.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155조(협의회 자료제출요구 등)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, 의견 개진,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56조(협회사항의 조정)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(調整) 요청을 하면 시·도 간의 협회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, 시·군 및 자치구 간의 협회사항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되는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
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
제157조(협의회 합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)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
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제158조(협회의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회의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소관 실 · 과		가족지원과
입 안 자	과 장	이 장 호
	담 당	이 영 도
	담 당 자	이 명 욱 (480-6573)